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8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이재인[6548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2547호

시행일자 2023. 12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71호

3.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”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5호, 2023.11.1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일부개정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3.6원

○ 2024년도 의원급 초진진찰료 : 17,610원 (2023년도 대비 ▲ 290원)

○ 2024년도 의원급 재진진찰료 : 12,590원 (2023년도 대비 ▲ 210원)

#붙임

1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71호 1부.

2) 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수가파일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# 수신처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